

<h1>보도자료</h1> <p>2020. 11. 23.</p>		<h2>양형위원회</h2>
	담당부서	운영지원단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판사 (☎ 02-3480-1924)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개최

■ 추진배경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2020. 11. 23.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 기업범죄를 양형 측면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 특히, 제1세션 소주제인 「산업재해와 양형」에 논의는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임

■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 일시·방식

- 주제 :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 일시 : 2020. 11. 23.(월) 14:00 ~ 18: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 1세션 「산업재해와 양형」- 주제발표 및 토론
 - ① 이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정재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

- 2015. 1.부터 2019. 12.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 통계분석 결과

-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망한 근로자(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고, 공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다만 합의와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도, 다른 공동피고인이 사망한 근로자(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이 무거운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도 다수 있었음
- 위반행위가 ① 안전조치의무(구법 제23조 제1~3항) 중 어떠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또는 ② 안전조치의무위반인지 보건조치의무위반인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형량 차이가 없었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

- ① 기존에 설정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개정법에 도입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함 ②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는 물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임 ③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경우 권고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현실화를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임. 다만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연구·분석 없이는 단기간 내에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은 중장기적 과제로 봄

②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부이사관)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

- 산업안전보건법은 과실범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위반 범죄의 성립에 사업주의 고의성을 요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중대재해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치사상 범죄군과는 별도의 독립한 범죄군으로 양형기준을 정함이 타당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보다 낮음에도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보다 높음.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권고 형량 범위를 높일 필요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실효성 있는 양형을 위해서는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양형기준이 필요함. 특히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함이 타당

③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

- 현재 과실치사상 범죄대상 양형기준의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조치위반치사죄 외에도 안전조치 내지 보건조치 위반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하여야 함. 이를 통해 단순과실치사상 범죄를 넘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양형기준을 제시해야 마땅함.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인 안전조치위반 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가 필요함
-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적절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가 감경인자에 치우쳐 있음. 이는 당해 양형기준이 과실범이라는 전제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임. 산업안전보건범죄 독립 양형기준이

설정된다면 양형자료 연구를 통해 양형인자 도출을 새롭게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대상은 사실상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로서 이윤추구의 기회와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처벌비용을 교량하여 법준수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윤을 상당히 증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구금형보다 효과적임. 이러한 점을 양형기준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면 현실적 징벌 수준으로 벌금형 양형을 조정하고 이를 별도 양형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④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

- 미국에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절차를 사전적으로 마련했는지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는 PCF(Proactive Corporate fault)와 위반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기업이 사후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는 RCF(Reactive Corporate fault)가 발전되어옴. 이러한 절차 및 조치 구비 여부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의 가중 또는 감경 양형인자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 의무위반의 판단인자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 의무위반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정책 및 시스템의 존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의 양형인자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법정형에 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자체가 지나치게 낮고, 양형기준 설정 후 오히려 평균형량이 감소했다는 분석을 근거로 기업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함

○ 2세션 「기업범죄의 양형」- 주제발표 및 토론

- ①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

로서의 준법 프로그램-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 미국 연방양형지침에 포함된 준법 프로그램 논의 성과

- 준법장치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 즉 올바른 준법장치는 구성원의 의식개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함
- 준법장치는 친기업적이라기보다 친사회적(pro-social)임. 다시 말해 준법장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 준법장치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이 강력할수록 더 좋은 것도 아님. 강한 준법문화는 기업의 창의성, 위험감수능력, 도전정신 등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임
- 준법장치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줌
- 제3자가 준법장치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특히 효과적인 준법장치가 문화적 요소를 지닌다고 할 때 더욱 어려워짐
- 준법장치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존재 여부라기보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의식을 개선하는 장치로서 작동하는지 여부임. 준법장치는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제도라기보다,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것이 더 적절함

- 한국사회에 적용 시(기업범죄의 양형요소로서 준법장치를 고려할 때의) 시사점

- 올바른 준법장치는 기업 구성원의 의식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기업 측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한국사회에는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함. ① 중대한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의 부재를 양형상의 가중요인으로서 고려하는 것, ② 중대하지 않은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의 존재를 양형상 감경요인으로 고려하는 것

②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

- 준법 프로그램은 조직, 우리 법상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이고, 자연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는 범죄행위 시에 준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을 때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규정함. 이는 조직이 준법 프로그램을 갖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을 경우에 조직의 책임을 일부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와 달리 범죄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하는 경우라면, 양형인자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 준법 프로그램을 우리 양형기준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법인 처벌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기준이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음. 준법 프로그램의 존재를 양형에 있어 감경사유 또는 가중사유로 삼는다면, 양벌규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란 '준법 프로그램의 존재'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함.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준법 프로그램에 따른 책임 감경 또는 가중을 논하기 이전에, 면책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됨

③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발표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형사절차가 회사 내부의 건전한 규범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론

-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추상적 언명 외에 조직의 행동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기에, 검사의 소추 여부에 대한 재량이 사실상 무한대인 반면 법관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은 0에 가까움
- 벌금형에 대한 기준이 없이 자연인과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구형 또는 선고하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준법장치의 존재 내지

부재를 단지 양형상 감경/가중요소로 고려한다고 하여 바람직한 윤리 내지 조직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연방양형지침상 준법장치에 관한 당근책은 별반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법이나 법률가, 특히 형법의 시각이 회사 내부를 포착하기에는 충분히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④ 최재혁 변호사가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

- 기업범죄에 대하여 처벌 수위 강화 일변도의 정책형성은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이전에 기업활동 자체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게 됨. 반면 자율적 규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유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가지는 위반행위 조기발견 및 시정조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도 양형에서 이러한 부분이 유리한 인자로 참작될 필요가 있음
- 양형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고려하려는 이유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유인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운용하여 왔다면 이를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도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사고의 대부분이 건설안전사고로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 사망인원수는 전체산업 대비 3배 이상,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라고 함.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의 화재사고 이후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산업안전사고, 특히 건설안전사고에 있어서 고유한 리스크 진단 및 개선 시스템 도입 여부를 형사처벌 여부나 양형 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별첨1]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식전행사	화상회의 접속 확인	
14:00-14:10		개회식	사회 :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각 3분)	1. 양형위원장 2. 양형연구회장
		회의 정리(2분)	
14:10~15:50 [100분]	◆ 제1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산업재해와 양형」 사회 :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형위 위원)		
14:10~14:50 [40분]	주제발표	•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의 양형」	
14:50~15:05 [15분]	지정토론	• 토론자 1 :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부이사관)	
15:05~15:20 [15분]	지정토론	• 토론자 2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0~15:35 [15분]	지정토론	• 토론자 3 :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5:35~15:50	플로어토론		
15:50~16:10	중간 휴식		
16:10~17:50 [100분]	◆ 제2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기업범죄의 양형」 사회 :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6:10~16:50 [40분]	주제발표	•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형위 자문위원)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16:50~17:05 [15분]	지정토론	• 토론자 1 :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7:05~17:20 [15분]	지정토론	• 토론자 2 :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17:20~17:35 [15분]	지정토론	• 토론자 3 : 최재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7:35~17:50	종합토론		
18:00	◆ 폐회		
18:10~18:30	총회		

[별첨2] 심포지엄 포스터



양형연구회 제5차
심포지엄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일 시 2020. 11. 23.(월) 14:00 ~ 18:00
방 식 비대면 화상회의
방청안내 접수 : 2020. 11. 9.(월) ~ 11. 13.(금) 홈페이지
 (기술적 문제로 방청인 수와 방청방법 제한 가능)
 ※ 방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참조

- 14:00 ~ 14:10 **개회식** - 사회 :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개회사) - 김영란(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양형연구회장)
- 14:10 ~ 15:50 **제1세션 : 산업재해와 양형**
 - 사회 : 이주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 발표
 주 제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의 양형
 발표자 - 이승원(서울남부지법 판사), 정재우(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 토론
 임영미(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부이사관))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해림(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 기업범죄의 양형**
 - 사회 : 김우수(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주 제 -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 :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상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 토론
 유관모(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권보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최재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18:00 **폐회**

문의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